

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 . 3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사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김근수)

가. 제 안 이 유

- 미탄 공동목욕탕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 미탄면 종합복지회관으로 편입시켜 예지원을 통해 목욕탕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미탄면 복지회관 위치확대(미탄면 창리 618-1번지 ⇒ 창리 618-1, 614-1번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'99년 12월 21일 개장 운영중인 미탄 공동목욕탕은 현재 미탄 자율방범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적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

- 미탄면 종합복지회관에 편입시켜 관리의 편리함과 아울러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5. 토론요지 : 없 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의 요지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부